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9.6.)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준옥]

목 차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8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5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4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9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55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64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3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77
1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안)	84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8. 22.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김향란, 강철우, 이흥희, 변상원, 박희순)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정이유

-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4조)
- 라.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등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 검토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8. 25. ~ 8.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제정(4): 창녕, 함양, 의령, 하동

5. 검토의견

가. 경제적 향상과 외식문화 활성화로 위생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 관광산업이 외식산업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5.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4.18.,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營業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1호, 2016.12.2., 일부개정]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6.22., 2016.12.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인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 2017.1**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안이유

-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증액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변경 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6년도말 조성액①	2017년도 기금조성 변경계획			2017년도말 변경 조성액 ②=①+④	비고
		수입②	지출③	증감④=②-③		
당초	55,632	15,287	3,000	12,287	67,919	
변경	55,632	17,287	5,000	12,287	67,919	
증감	-	2,000	2,000	-	-	

나.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천원)

구분	수입					지출				비고
	계	예치금 회수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	계	사무 관리비	기본 경비	예치금	
당초	70,919	55,632	12,210	3,000	77	70,919	3,000	-	67,919	
변경	72,919	55,632	12,210	5,000	77	72,919	5,000	-	67,919	
증감	2,000	-	-	2,000	-	2,000	2,000	-	-	

4. 세부사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자금 조성 변경 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6년도말 조성액 (a)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2017년도말 변경 조성액 (e)=(d)+(a)	비고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당 초	55,632	15,287	3,000	12,287	67,919	
변 경	55,632	17,287	5,000	12,287	67,919	
증 감	0	2,000	2,000	0	0	

2 자금 운용 변경 계획

구 분	사 업 명	도비 사업비(천원)
당 초	음식문화개선사업(소형복합찬기지원)	3,000
변 경	음식문화개선사업(소형복합찬기지원)	5,000
증 감		2,000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항목	수입 변경계획			항목	지출 변경계획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합 계	70,919	72,919	2,000	합 계	70,919	72,919	2,000
보 조 금	3,000	5,000	2,000	비용자성 사업비	3,000	5,000	2,000
예 치 금 회 수	55,632	55,632	0	예 치 금	67,919	67,919	0
이자수입	77	77	0				
기타수입	12,210	12,210	0				

② 수입 변경계획(안)

(단위:천 원)

장·관·항·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수 입 합 계	70,919	72,919	2,000	
200 세외수입	12,287	12,287	-	
210 경상적 세외수입	77	77	-	
216 이자수입	77	77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7	77	-	
220 임시적 세외수입	12,210	12,210	-	
223 기타수입	12,210	12,210	-	
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210	12,210	-	○과징금
500 보조금	3,000	5,000	2,000	
520 시·도비 보조금 등	3,000	5,000	2,000	
521 시·도비 보조금 등	3,000	5,000	2,0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3,000	5,000	2,000	○복합찬가지원 (도비증액)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632	55,632	-	
710 보전수입 등	55,632	55,632	-	
714 예치금회수	55,632	55,632	-	
714-01 예치금 회수	55,632	55,632	-	

③ 지출 변경계획(안)

(단위:천 원)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민원봉사실	70,919	72,919	2,000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3,000	5,000	2,000
식품진흥기금 운영(식품진흥기금)	3,000	5,000	2,000
음식문화개선	3,000	5,000	2,000
201 일반운영비	3,000	5,000	2,000
01 사무관리비	3,000	5,000	2,000
○우수업소(모범음식점 등)지원 - 복합찬기 구입 50,000×100개소	3,000	5,000	2,000
재무활동(민원봉사실)	67,919	67,919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67,919	67,919	-
식품진흥기금 적립	67,919	67,919	-
602 예치금	67,919	67,919	-
01 예치금	67,919	67,919	-
○식품진흥기금 예치	67,919	67,919	-

5. 검토의견

- 가.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비가 당초 3,000천원이 내시되었으나 추가로 2,000천원이 더 내시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 나. 기금의 자금운영계획 수입 및 지출 기본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 운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며
- 다. 지출계획 기본원칙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주요항목 지출계획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법령에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8. 22.

나. 발 의 자: 강청우 의원 대표발의(이흥희, 이성복, 표주숙, 박희순)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적용범위, 절차,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다.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마.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법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제30조의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3조, 제4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8. 25. ~ 8.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경남도내 제정(1): 합천군

5. 검토의견

- 가. 장애인도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라 생각되며
- 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08.12.31.]

-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0.9.>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목개정 2009.10.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89호, 2017.4.18.,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562호, 2017.2.8.,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07호, 2017.7.24.,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14.6.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礙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6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법률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불편·부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 없이 의무 부과 내용 삭제함(안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거: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서는 군수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일반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삭제함.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7. 28. ~ 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 완료: 합천군

5. 검토의견

가.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준수사항 가목관련 법제처 법제관 회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식 안에서 준수사항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채무이행상황 등은 보증을 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례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6조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률에 근거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서는 군수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일반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음)	해당 규정 삭제

□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해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삭제>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거창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완화함(안 제2조)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90명 이상’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7. 26. ~ 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11): 밀양,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함양, 합천, 통영, 하동

5. 검토의견

가. 상위 법령에 맞게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개정]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거나 폐기"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2017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2조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음	감사청구 주민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200명 이하로 변경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190명 이상이어야 한다.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정이유

-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국·도비 보조금, 군·군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등

다. 기금의 계정별 용도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노인복지계정: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 자활계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 호의 사업 등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계정별 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이자율이 높은 예금의 관리 등

마.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제14조)

- 위원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13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5.~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

5. 검토의견

- 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 나.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하여 그에 따른 제 규정을 명확히 제정함으로써 복지기금관리의 효율성과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 소요경비
- 관련 조문
 - 제5조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 제6조 양성평등계정의 용도
 - 제7조 자활계정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노인복지	20	20	21	21	22	104
	양성평등	20	20	21	21	22	104
	자활지원	90	90	92	92	94	458
	계	130	130	134	134	138	666

3. 관련 의견

-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여
- 노인복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적인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손 용 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지방재정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지방회계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5.29., 타법개정]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5.4.2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6호, 2017.3.14.,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91호, 2016.2.3., 일부개정]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 17-0101	견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7. 5. 18.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 						

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11년 5월 26일 영등포구 조례 제841호로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제4조)을 두었는바, 이 사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경과 후 영등포구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인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사례 참조).

살피건대, 영등포구조례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영등포구조례가 시행된 날인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17년 1월 1일에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금의 근거로서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같은 조례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례를 실효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폐지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두어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조례의 실효를 위한 목적으로는 반드시 형식적인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영등포구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여성복지사업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5.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각 기금의 용도별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장 노인복지사업

제8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1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 노인관련 단체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장 여성복지사업

제9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2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내 단체로 한다.

1. 여성관련 비영리단체 및 공익단체
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회단체
3. 그 밖에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3조제2호의 여성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여성관련 주요 사항

제4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3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특별장학생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에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장학생 중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지출계획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제5장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제11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제3조제4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③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자활공동체는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사업자에게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6장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제3조제5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의 학자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5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7장 보칙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용도별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 및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정이유

-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아림 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운용
-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아림예술제, 아림예술제위원회
-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재원: 국비·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등
 - 용도: 아림예술제 행사, 아림예술제 진흥사업 등

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 해당연도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

바.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운영, 간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7,50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의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목적 달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림예술제 행사 등에 지원
- 관련 조문: 제6조 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군비	7,500	7,500	7,500	7,500	7,500	0
	소계(a)	7,500	7,500	7,500	7,500	7,500	0

3. 관련 의견

-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액(500,318천원) 및 이자발생액(7,500천원)에 대하여 1년마다 기금은 예치하고, 그 이자 발생분 내에서 사업추진
- 따라서 기존 조성된 기금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며 별도의 출연금은 발생하지 않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기금 예치: 500,318천원
-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이자분): 7,500천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유 태 정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전문개정 2011.5.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

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회계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제안이유

-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 문: 관광산업과 관광문화에 관한 회원 시군의 협력체제 구축 유지
- 나. 총 칙: 제1조~제4조
 - 1) 명 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 2) 목 적: 서부경남지역의 관광사업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등
 - 3) 사 업: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 설명회 개최 등

다. 회원 및 조직: 제5조~제10조

1) 회 원

가) 서부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1개 시군의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

(1) 시: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

(2) 군: 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나) 공공기관 등

(1) 당연회원: 한국관광공사 경남권 관할지사장

(2) 추가할 수 있는 회원: 경남도청, 관광학계, 관광업계
대표 인사

2) 회 의

가) 구 분: 정기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정기총회는
1/4분기 정기회의)

나) 의 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3) 재 정

가) 수 입: 회원 시군별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나) 회 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운용기준 준용

다) 예산결산

(1) 예 산: 매년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같이 1/4분기
정기회의 의결

(2) 결 산: 다음 연도 1/4분기 정기회의 승인 의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국민권익위 2016.10. 31.)

나.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 절차

1) 행정협의회의 정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

2) 설립절차



다. 기타사항

1)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

2) 시군별 연간 분담금 규모: 10,000천 원 정도

5. 검토의견

가. 이 규약안은 서부경남 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자치단체간 특성을 살린 관광벨트라인 조성 등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공동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 향후 이 규약의 목적되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챙겨나가야 한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 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 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 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회의 의 구성 기준)

-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에 둔다.

제4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관광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실·과를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및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시·군의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및 재정운용, 회의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물

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3. 국내외 관광·여행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팸투어 시행
4. 국내외 합동 관광설명회 개최
5.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6. 공동 시티투어사업
7.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상호 지원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자 회의를 따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 ①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 시군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협의회는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은 그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세입세출결산안은 그 다음 연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회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정기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감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설립 목적 실현과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3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회원 2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의제가 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4조(합의)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요구이유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와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 나. 위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
- 다. 주요시설

구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라. 위탁대상 사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242,184천원(연간 80,728천원/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 현재 관리현황

- 위탁기관: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위탁기간: 2014.12.19. ~ 2017.12.19.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나. 그간추진현황

- 전수관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2017. 7월

다. 향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10월초
- 위·수탁계약 체결: 2017. 12월초

5. 검토의견

- 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시설과는 다른 특정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 나.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에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위·수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및 기타 제반사항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관리 계획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위탁기간의 만료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1 전수관 운영 근거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2 기본현황

- 시설 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관
- 위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
- 인력현황

직위	이사장	사무국장	직원
인원/명	1명	1명	1명
직무	대표 (상근)	총괄업무, 기획업무	실무

- 시설현황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20. 12. 19. (3년간)
- 위탁대상 업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 수탁기관 모집 : 수의계약
 - ※ 문화재보호법 84조: 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위탁조건
 -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을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해 홍보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전문성 있는 단체
 - 전수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위탁 비용으로 사용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며 관리물품 현황은 매년 보고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공익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10월초
- 위·수탁계약 체결: 2017. 12월초

5 기대효과

-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무형문화재 홍보 및 효율적 관리운영 기대

● 관련법령 발췌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운영위탁)

-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삭제(구 제2조제2항, 제3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 나. 협의회 재정 관련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운영 조항 삭제(구 제9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그 밖의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에 맞춰 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19.~8. 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개정 완료(5): 남해, 하동, 창녕, 함양, 합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

5. 검토의견

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운영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 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 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지도·감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요구이유

- 어르신들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재 위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명: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나. 시설현황

- 위치: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 규모: 부지면적 4,283㎡(건축 연면적 2,568) 지하1층, 지상4층
- 병상규모: 130병상
- 세부시설현황
 - 지하1층: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지상1층: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임상병리실
 - 지상2, 3층: 간호사실, 입원병실
 - 지상4층: 식당

○ 의료장비 및 물품: 325종 / 2,872개

다.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2007. 10. 23. ~ 2017. 10. 22.(10년간)
- 진료실적 현황(최근 5년간)

구분(년도)	합 계	외래환자	입원환자		비고
			전체입원환자수	거창군거주환자수	
계	10,298	9,169	1,129	962	
2012년	1,196	959	237	195	
2013년	2,417	2,179	238	206	
2014년	3,753	3,559	194	173	
2015년	2,094	1,877	217	189	
2016년	838	595	243	199	

○ **인증의료기관 획득(2015년도)**

- 인증기간: 2015. 8. 9. ~ 2019. 8. 5.(4년간)
- 평가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증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사, 간호인력 가산등급)**

-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1등급
- 산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음**

라. 재위탁 추진 상황

- 수탁기관(서경병원) 재수탁신청서 제출: 2017. 6. 14.
- 재위탁 자체 평가 실시: 2017. 6. 23.
- 재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17. 7. 6.

※ 심의위원: 7명(재 위탁 가결)

마. 향후 추진계획

- 재수탁기관: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2017. 10. 23. ~ 2022. 10. 22.

- 위탁내용
 - 치매환자의 진료 및 입원 관리
 - 거창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 위·수탁 운영계약서 공증 및 계약체결: 2017. 9월

4. 기타사항

가. 경남지역 공립요양병원 위탁 현황

(2016. 12월말)

병원명 (수탁운영자)	규모 (병상)	입원 환자	직원 (의사)	위탁기간 (계약횟수)	비고
도립사천 노인전문병원	228	193	97 (6)	2013.10.11 ~ 2018.10.10 (5년 1회)	2018년
도립통영 노인전문병원	280	250	124 (8)	2016. 6.11 ~ 2019. 6.10 (3년 4회)	2016년 재위탁
도립김해 노인전문병원	199	172	82 (5)	2017. 7.12 ~ 2020. 7.11 (3년 5회)	2017년 재위탁
도립양산 노인전문병원	199	194	75 (6)	2017. 7.12 ~ 2020. 7.11 (3년 5회)	2017년 재위탁
시립창원요양병원	175	168	64 (5)	2013. 1. 1 ~ 2017.12.31 (4년 2회)	2017년말
시립마산요양병원	295	295	128 (10)	2008 10 30 ~ 2018 10.29 (10년 1회)	2018년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128	126	67 (5)	2016. 5. 1 ~ 2021. 4. 30 (5년 1회)	2016년 수탁자계약 포기로 공고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95	95	46 (2)	2008. 4.22 ~ 2018. 4.21 (10년 1회)	2018년

나. 재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오랜 기간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축적된 경험과 환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함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인 서경병원과 연계로 빠른 조치 가능

다.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운영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가. 어르신들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나. 사전 행정절차인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거창군립노인요양 병원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2017. 7. 6 개최 원안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제출 되었음
- 다. 상위 법령 및 조례,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은 문제점이 없으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노력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

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2012.11.07.)

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 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8. 23.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현황

① 거창시장 복층주차장 신축

1. 제안이유

- 시장 주차 수요대비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1.19.: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신청(중소기업청)
- 2017.3.17: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선정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거창시장 주차장 지내
- 사업기간: 2017.9. ~ 2018.6.

- 부지면적: 3,290m²(토지소유자: 거창군)
- 사업량: 3,750m²(3층 4단, 자주식 철골 주차장)
- 사업비: 2,930백만원(국비 1,758 군비 1,172)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사업량				
신축	건물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대지	3,750m ² (주차면 190면)	2,930,000	2018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거창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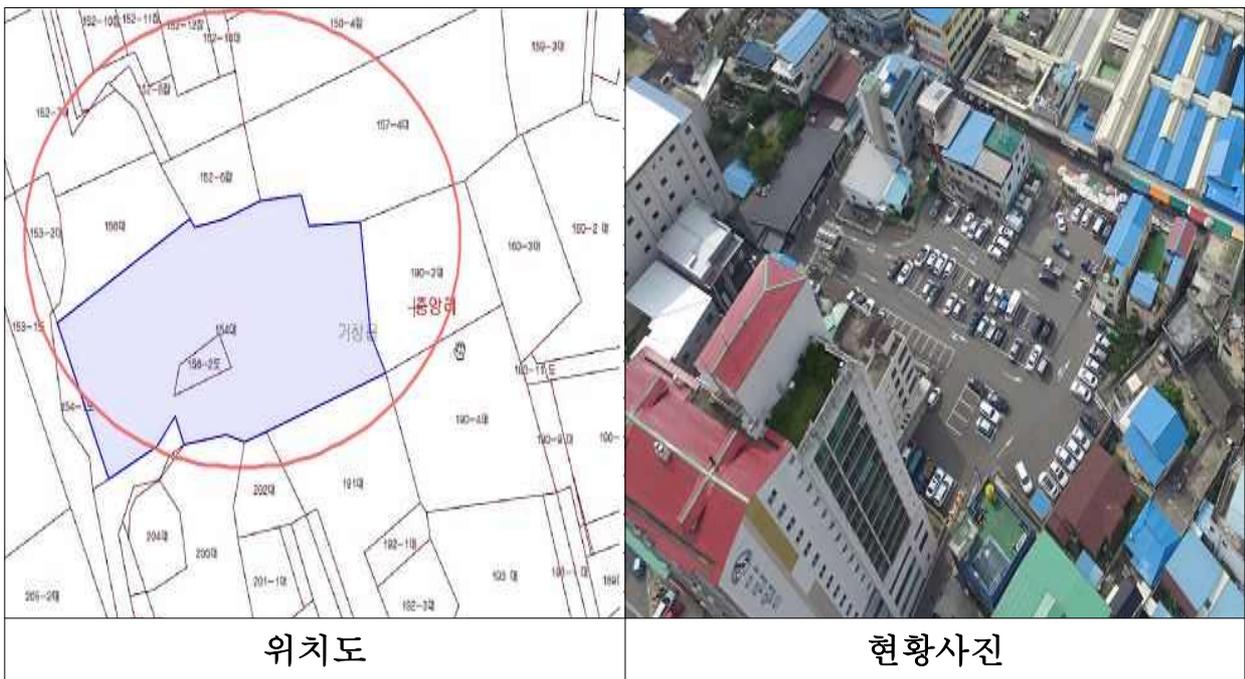
※ 기준가격은 사업비로 계상

라.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2017.9.
- 착공: 2017.12.
- 준공 및 건물등기: 2018.6.

※ 현재 주차면수 90면 ⇒ 사업 후 190면 확보

3.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읍 중앙리 154 외 1필지)



위치도

현황사진

3. 관련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검토의견

- 가. 경제적 향상으로 차량이 사치성에서 생활필수품으로 됨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주차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 나. 오래된 전통시장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음
- 다. 이번 거창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됨은 다행이라 생각하나
- 라.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므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한 시장 주변이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을 저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

1. 제안이유

- 골프참여 인구의 대중화 및 국민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하여 조성 완료된 골프장 시설의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08.12.2.: 골프장조성협약 체결(거창군 ⇔ 체육진흥공단)
- 2012.09. ~ 2016.06.: 골프장 조성공사(체육진흥공단)
- 2017.7.20.: 기부채납 승인 요청(체육진흥공단 ⇒ 거창군)

나. 기부채납 개요

- 기부자
 - 대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권한대행 김성호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근 거: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제5조(운영권보장 및 기부채납)
- 기부재산
 - 기부재산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고
총 액	19,943,363,854	
공 단	13,606,605,022	기부채납
거창군	6,337,058,832	진입도로 등

○ 기부채납 재산 현황

구 분	내 용
재산의 명칭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대 지 위 치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지 역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571,765.4㎡(172,958평)
기부채납재산	건축물 : 클럽하우스, 관리동, 경비실, 카트창고, 야외화장실, 라이트시설 골프코스 : 그린, 티, 페어웨이, 벙커, 러프, 연습그린

다. 기부재산 세부내역

구 분		면적(㎡)	규 모
합 계		571,765.4	
운 동 설	골프코스	129,083	그린(7,464) 티(2,252) 페어웨이(68,437) 러프(48,476), 벙커(1,802), 연습그린(652)
건 축 설	클럽하우스	3,140	락커, 샤워실, 사무실, 레스토랑 등
	관리동	2,410	장비창고, 사무실, 락카/샤워실, 숙직실
	카트고	1,400	승용식 전동카트 보관 창고
	경비실	7	안내실 겸용(클럽하우스 앞)
	야외화장실	(6.24)	2번~5번홀 사이
원형보전녹지		387,283.4	
부대 시설	진입도로	3,307	B(폭)= 10m / L(길이)= 334m
	관리도로	848	B(폭)= 4m / L(길이)= 217m
	카트로	14,144	B(폭)= 2.7m / L(길이)= 4,844m
	주차장	5,591	174대(장애인 9면 포함)
	저류지	21,130	11개소
	물탱크	914	1개소
	묘포장	2,508	1개소
	가스저장고		1개소
	야간조명		15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3.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3. 관련법규 등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다.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4. 검토의견

- 가.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국가 정책으로 국민의 골프참여 저변 확대와 고용창출과 더불어 소득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협약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 나. 이권 기부채납은 거창군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상호간 협약 체결한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제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 기부 채납 후 권리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를 검토하여 거창군이 불리한 조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거창군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가조면 지역에 대중골프장 코스와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을 공익성 확보·생태적 여건에 충실하게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거창군"과 "공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그 세부내용은 "거창군"이 제공하는 토지와 재산의 상황,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거창군"과 협의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제3조(골프장 조성 토지) ① "거창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이하 "본 사업시설") 조성 사무에 제7조의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공단"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공단"은 동 토지에 "본 사업시설"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한다.

1. 토지의 위치 :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 43 일원
2. 토지의 면적 : 446,670m²

토지 면적은 거창군이 최초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부지와 거창군 문서(문화관광과-15843)가 제시한 추가부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은 추정면적이며 실계를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③ "거창군"은 제①항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토지가 "거창군"의 소유가 아니거나 토지에 근저당권 등 사권의 설정, 인허가 및 지장물 처리 지연 같은 제약 등 "공단"이 "본 사업시설"을 조성,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거창군"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러한 제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골프장의 조성 등) ① "공단"은 "본 사업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태적인 여건에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한다.
2. 놀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3. 관수·배수처리 시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㉔ "공단"은 "본 사업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영향성 검토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㉕ 거창군은 골프장조성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거창군과 공단은 협의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권보장 및 기부채납) ① "공단"은 준공된 "본 사업시설"을 투자비 회수를 위해 무상사용·수익함을 전제로 "거창군"에 기부하며, 이를 위해 "거창군"은 "공단"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관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본 사업시설"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및 시설준공 후 지체 없이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부대시설을 "거창군"에 기부한다.

제6조(골프장 운영) ① "공단"은 "본 사업시설"의 조성,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며 투자비가 회수된 후 운영권을 "거창군"에 인도한다.

② "거창군"은 "공단"이 "본 사업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비 회수차원의 영리를 위해 등록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운영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공단"은 "본 사업시설" 운영시 영입활동 전반의 '외부용역(outsourcing)'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공단"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선정된 외부용역 업체가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파견인원은 "공단"의 팀장급 이하 직원 3인 이하로 제한한다.

④ 골프장 운영중 골프장내 각종 시설물 및 기반시설 개·보수시 "거창군"과 협의하여 보수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기간) ① "공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한 재산물 운영·관리하되 그 재산 및 사용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2항을 근거로 하여 투자비의 회수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1항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거창군"은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3년마다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정되고 공단이 동 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의 회계결산 후에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못한 경우 "거창군"은 제 19조의 내용에 따르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공단"이 제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및 각종 평가진행은 물론 환경시민단체 등에 대응시 "거창군"은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후보지 선정과

장에서 "공단"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민·허가지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 주민실득, 환경단체 반발에 대응 등의 협조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공단"은 매년 초 전년도 운영현황 자료를 "거창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창군"은 자료의 검토결과 시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과 "거창군"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② "거창군"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비 범위) ① 투자비란 "본 사업시설"의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각종 설명회, 행사 등의 무대비용, 기초운영 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점심계장 전일까지의 영업준비금을 포함한다. 투자비를 집행하기 위한 업체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공단"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② "공단"이 투자하는 투자비의 상한액은 150억원으로 한정하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와 의거하여 "거창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대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공단과 거창군이 별도로 협의한다) 단, "공단"은 지급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이를 "거창군"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③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은 "거창군"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 "거창군"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 한다.

④ 골프장 코스관리 등을 위한 운영 장비구매 비용은 "공단"의 추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거창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운영 장비구매 비용을 투자할 경우 동 금액만큼 투자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⑤ 투자비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동 협약서 규정을 토대로 공단과 "거창군" 양측이 합의하여 지정한 회계 법인이 실사 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투자비정산) ① "공단"은 "본 사업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에서 "개보수충당금"을 우선 적립한 후 나머지 "당기순이익"을 전액 회수한다.

② 제1항의 투자비 회수액과 관련하여 "공단"은 매년초 전년도 운영현황 자료를 "거창군"에게 제출할 때 공인회계보고서를 같이 제출한다.

제12조(사용, 수익권의 종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투자비가 회수되어 토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종료된 후 "거창군"은 "본 사업시설"의 토

지 및 부대시설과 시설관리 운영권을 사용, 수익권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인수한다. 단, 카트, 잔디기계 등 골프장 운영을 위한 장비에 대해 "공단"이 근거당연 품 사권을 설정한 경우 "공단"은 설정된 사권을 해지한 후 해당 장비를 "거창군"에 이관한다.

제13조(골프장 이용료) ① "본 사업시설" 이용료(골프장, 골프연습장 등)는 "거창군"과 사전 협의 후 인근 골프장 이용료 수준을 반영하여 "공단"이 책정한다.

② "공단"은 매년 불가 상승률을 감안, "거창군"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단위로 이용료를 조정하고 이를 "거창군"에게 통보한다.

제14조(사업내용 변경 등) "거창군"이 "본 사업시설" 조성을 위해 제공하는 부지면적, 위치 등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변경 시는 "공단"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거창군"은 "본 사업시설" 조성을 위한 '모든 부지의 토지사용권이 확보된 시점 이전'까지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은 "본 사업시설" 조성을 위한 '모든 부지의 토지사용권이 확보된 시점 이후' 조성, 운영,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본 사업시설"의 '모든 부지의 토지사용권이 확보된 시점 이후'의 조성,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거창군"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거창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개보수충당금의 적립) ① "공단"은 지반침하 등 예상치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출액"의 10%를 개보수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② "공단"은 "거창군"에게 매년 개보수충당금의 적립 내역을 제출하며, 사용 시 "거창군"의 승인을 득한다.

③ "공단"은 미사용·적립되어 있는 개보수충당금과 해답으로 획계결산 후 투자비 회수액의 합산 액이 미회수 된 투자비 범위를 넘는 경우 "거창군"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용·적립되어 있는 개보수충당금을 투자비 회수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운영, 관리기간 완료 후 미사용·적립되어 있는 개보수충당금을 "거창군"에 이관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또는 "공단"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거창군" 또는 "공단"이 동 협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대만히 하여 양자가 합의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3조 제1항의 토지위에 설정된 제반 장애물을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거하지 못한 경우

2. 부지의 언덕, 귀치나 "거창군"의 지원내용 등과 같은 주요 사항이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거창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추가부지 확보문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되거나 실현이 어려운 경우

3. 10조 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거창군"에서 초과비용을 "공단"에 즉시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③ "거창군" 또는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본 협약은 해지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 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 중의 경우 기성 부분)을 즉시 "거창군"에 귀속되고 공단의 권리 등이 소멸하며, 무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제18조(무자비에 대한 손해배상) ① 중도해지 시 지급금분 공시기간 중인 경우는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기 투입된 인허가 비용 등의 무자비를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운영기간 중인 경우는 이미 투입된 총 무자비의 해지 당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중도해지 시 지급금에 대하여는 협약 해지일로부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야 하고, 그 이자는 해지일 직전 1개월간 한국증권선신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평균 유통 수익율로 산정한다.

③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제10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한다.

④ "거창군"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각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투자비보전) ① 제7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공단"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창군"은 "공단"에게 미 회수된 투자비를 3년간에 걸쳐 지급하되 이를 균분한 금액(미 회수된 투자비/3년)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② 1항 규정에 따라 "거창군"이 매년 지급금액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공단"은 나머지 미 회수된 투자비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체 손해금은 지체발생일 직전 1개월간 한국증권전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평균 유통 수익율로 하위 편결에 의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석 등) "본 사업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협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거창군"과 "공단"은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책사유 발생 당시자의 상대방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거창군"과 "공단"이 상호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 회수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본 사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거창군"과 "공단"이 서로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12월 2일

"거창군" (거창군 거창읍 삼림리 84-1)

군 수 완 동

"공단" 서울울림박물관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이사장 김 주 훈 (인)

③ 공유임야 매각

1. 제안이유

-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공유임야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허가 축사(양계장) 양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위 치: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158-1
- 면 적: 3,306m²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필지			992
매각	토지	북상면 갈계리 산158-1	임야	3,306	992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m²당 300원)

나. 재산 대부현황

- 주 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941-20
- 성 명: 서대수
- 대부용도: 기타용(양계장)
- 대부면적: 3,300m²
- 대부계약: 2012. 1. 1. ~

다.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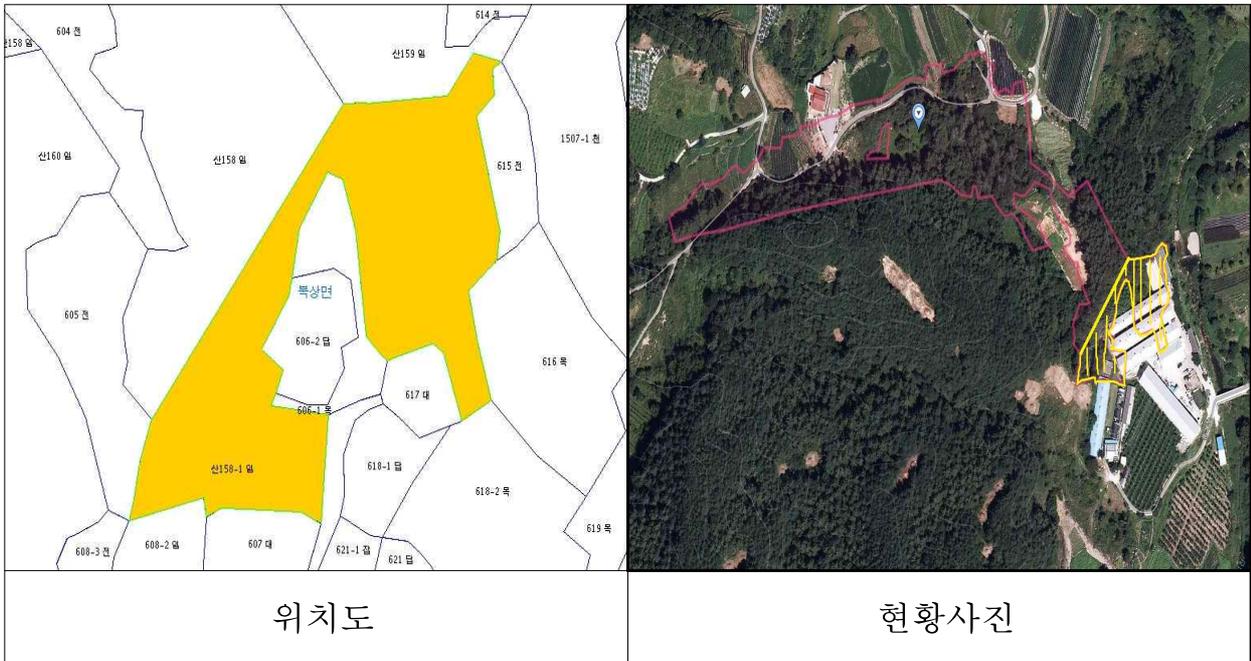
- 1980년대 후반 ~ : 양계업 시작.
- 2012.1.~4.: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및 최초 대부계약 체결.
- ※ 변상금부과: 2007.1.1~2011.12.31.(37,730원)/2017년 대부료: 약 45,000원(연간)

- 2017.5.: 무허가 축사 양성화정책에 따라 임대 토지 불하 희망
- 2017.6.~7.: 산158번지에서 산158-1번지 분할 완료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
- ※ 양성화 불가 시 사용중지·폐쇄명령으로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라. 향후계획

- 2017. 11월 중: 토지매각(일반경쟁입찰)

3 . 위치도 및 현황사진(북상면 갈계리 산158-1)



3. 관련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검토의견

- 가. 이권 토지는 무단 점유해 오다 변상금 납부 후 2012년부터 대부계약 체결을 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 나. 그리고 임대 토지 위에 불법 축사가 일부 건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면 축산농가는 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상황으로
- 다. 군으로서는 이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고 보존성도 떨어진다고 검토되었으므로 축산농가의 민원해소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되어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

1. 제안이유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 어르신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함.
- 이에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6.12.: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6.21.: 적합부지 검토 및 소유자 면담
- 2017.7.28.: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1개소 2필지 적합 의견(김천리 237-9, 237-16)

재 산 의 표 시			소유자	비고
위치	지목	면적		
거창읍 김천리 237-16	잡종지	606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사유지	군유지 인접부지

나. 취득 개요

- 위 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번지
- 사업기간: 2017.8. ~ 2018.3.
- 부지면적: 861㎡(군소유: 530㎡, 개인소유: 331㎡)

○ 사 업 비: 1,191백만원(국·도비675, 군비516)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계	1,191	600	75	516	
시설비	991	600	75	316	
부지비	200			200	

※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1㎡당 1,870천원) ⇒ 건물면적 530㎡

○ 주요기능: 노인요양등급미등급자(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주간(낮)보호시설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욕구과약,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상담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관리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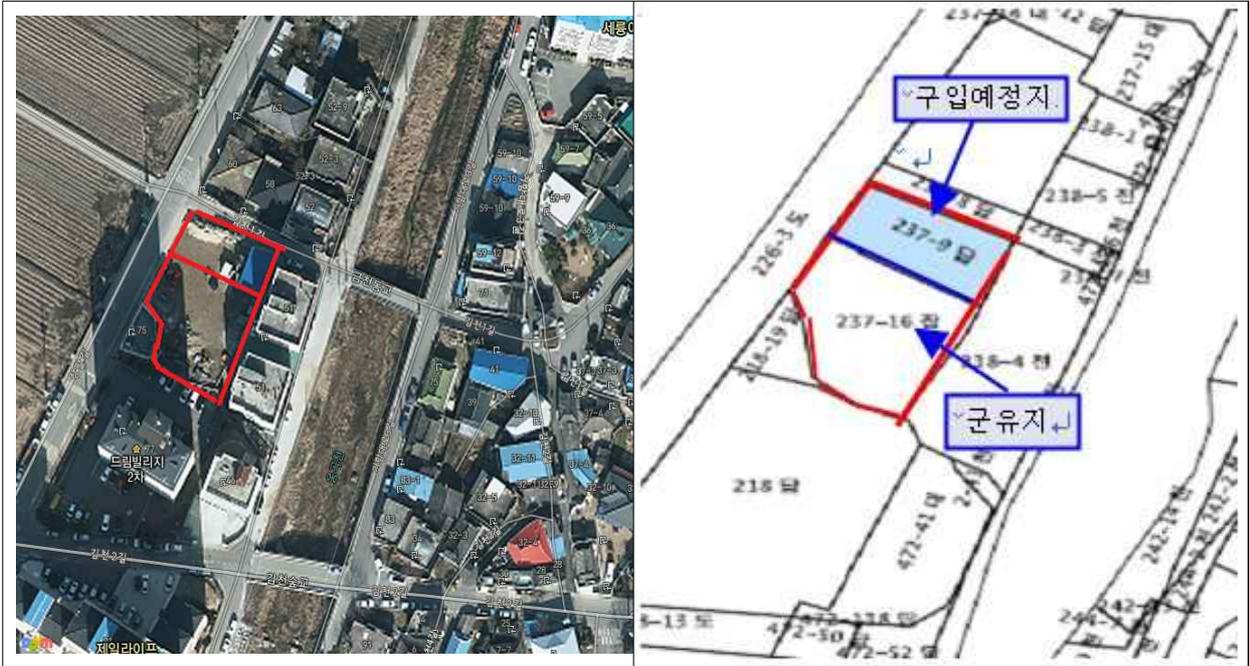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토지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104,265	2017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대	530	991,000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신축

※ 기준가격: 토지(2017년도 공시지가)/ 건물신축(건축 및 시설비 등)

라. 향후계획

- 2017. 09.: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 2017. 10.: 설계용역
- 2017. 11.: 착공
- 2018. 06.: 준공

3.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3. 관련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검토의견

- 가.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그 수반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실제로 2020년 예상 치매 환자 수는 84만명, 관리 비용은 1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가 있으면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은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 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치매 국가책임제가 우리 나라도 시행하게 되어 “한국형 치매관리 모형”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라.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가족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치매 가정에 있어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 마.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현 시점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주변환경 여건에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

1. 제안이유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을 확충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치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7.2.: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 수요조사(경남도→거창군)
- 2017.8.1.: 치매안심병동 수요조사보고(거창군→경남도)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사업기간: 2017.9. ~ 2018.3.
- 규 모: 100병상 부지4,283m²(연면적2,568m²)
- 사 업 비: 1,200백만원(국비960, 군비240)
- 주요내용
 - 2층 전체(50병상) 치매전문병실로 리모델링
 - 4층 치매집중 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증축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취득가액	비고
	소 재 지	장소	면적등		
증축등	거창읍 운정3길180	2층(9실/50병상)	754.2	350,000	리모델링
		4층(증축/프로그램실)	198.0	600,000	증 축
		2층~4층	장비및프로그램	250,000	9종 등 구입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현황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준공 일자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부지면적	규 모			
대지	거창읍 운정3길180	4,283	-	'05.12.28.	515,244	거창군수
건물	거창읍 운정3길180	2,568	지하 1층 지상 4층	'05.12.28.	1,514,515	거창군수

라. 향후계획

- 2017.9.: 추경(군비) 편성 및 행정절차
- 2017.10.: 설계 실시
- 2017.11.: 계약 및 공사발주
- 2017.12. ~ 2018.3.: 공사 및 준공
- ※ 경상남도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읍 운정3길 180)



3.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10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검토의견

가.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그 수반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실제로 2020년 예상 치매 환자 수는 84만명, 관리 비용은 1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가 있으면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은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 치매가 심한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소시켜야 하나 치매전문
요양병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에서 치매병동 확
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라. 거창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치매전문병실 확충과 치매집중 치료실 증축은
시대적 소명이며 필요한 사업이라 검토되었음

5.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